

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(제36조관련)

1.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비용
가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
나. 삭제 <2016. 6. 30.>
다. 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약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. 다만, 골재채취단지가 「공유수면관리법」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
라. 골재의 부존량·부존위치 및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비용
2.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·사용료의 납부비용
가. 「하천법」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
나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점용료·사용료
3.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한 비용
가.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
나.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비